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110885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보조참가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수 담당변호사 염정환

변 론 종 결 2021. 3. 9.

판 결 선 고 2021. 5. 25.

## 주 문

1. 피고는 A{D 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9. 4. 18. 접수 제68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3. 10. A과 사이에 A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A이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2019. 7. 31. 위 은행에 A을 대위하여 33,351,608원을 변제하였다.

나. 한편, A은 2019. 4.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8.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은, A을 상대로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피고를 상대로는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A은 이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 2019하단2086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20. 3. 17.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원고보조참가인은 같은 날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sup>1)</sup>, 2021. 1.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해 피고에 대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일탈시킴으로써 파산재단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 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특정한 채권자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부인대상행위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전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 혹은 담보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더 나아가 파산채권자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 내지 의욕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27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다1813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정 채권자인 피고를 배당에서 유리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A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편파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이상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A은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금채무 외에도 F조합, 중소기업은행, G조합, H은행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그 채무액은 15억 원을 초과한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4. 17.로부터 약 2주 전인 2019. 4. 2. A에 대한 채권자 I이 A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J) 2019. 4. 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이 2019. 4. 15. A에게 송달되었는데, A은 위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또한, A은 E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를 2019. 4. 10.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였는데(갑 제4호증),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불과 일주일 전이다.

④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4개월만인 2019. 8. 5. 파산신청을 하였고, 결국 2019. 11. 21. 파산선고를 받았다.

####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2)

피고는, 피고 역시 A에 대한 채권자였고, A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A의 제안에 따라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그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5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

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 다. 부인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에 따라 부인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9. 4. 18. 접수 제68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용

별지

## 부동산의 표시

1. 충남 태안군 K 대 387㎡

2. 충남 태안군 K

[도로명주소] 충남 태안군 L

위 지상

시멘트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85.9㎡

3. 충남 태안군 M 전 146㎡

4. 충남 태안군 N 전 325㎡. 끝.

1) 원고보조참가인이 기존에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9430 사건 중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만 2020. 3. 18.자 이송결정에 따라 이 법원에 이송되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3항).

2)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에 주장에 대하여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